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조사 실시 및 유학업체 관리 현황 보고〉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62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 학생 입학실태 조사	3
2) 대학의 유학업체와 관련한 사항 보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u>방법</u>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은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u> ④ <u>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u> ⑤ ----- ----- <u>방법</u> 및----- ----- <u>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시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u> ----- -----.

국내 한 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체결한 유학 알선 업체가 2023년 1월, 유학생 40명에게서 입학금 명목으로 2억 2천800여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로 유학알선업자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음¹⁾.

또한 2024년 10월 15일 한경국립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는데, 한경국립대학교 국제협력센터와 유학업체의 등록금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국내 대학교로 유학을 오려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업체의 범죄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내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실태와 유학업체의 유학생 관리 현황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외국인 학생 입학실태 조사

현행 ‘고등교육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 학생 입학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1) 베트남 유학생 47명 대학입학금 가로챈 유학 알선업자 구속, 2024.06.08., 연합뉴스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 교육부는 매년 대학별 외국인

2)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학생 수, 유학형태 등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³⁾).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⁴⁾, 교육기본통계조사시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통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⁵⁾.

교육기본통계조사 중 외국인 학생 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i)외국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명, 사업코드 4705-301) 사업에 대한 내역사업 중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4)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학생 과정구분, ii)유학형태, iii)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 iv)교육기간, v)기숙사 수용여부, vi)TOPIK 급수, vii)영어트랙전형여부, viii)영어시험종류, ix)영어시험점수, x)장학금 수혜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⁶⁾.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 통계를 위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 관련한 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교육부는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학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시기 등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하는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학 실태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등에 따라 대학정보 공시제도, 교육통계조사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 업무에 과중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입장임.

6) KESS 교육통계서비스 참조(<https://kess.kedi.re.kr/index>)

< 개정안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의견 현황 >

기관명	주요의견
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별도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조사를 신설하는 것은 대학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1) 대학정보공시: 외국인학생 현황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등

2) 대학의 유학업체와 관련한 사항 보고

현행 ‘고등교육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 및 대학 등의 교육부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5조⁷⁾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⁸⁾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⁹⁾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¹⁰⁾를 통해 매년 대학별 유학생 유치·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국제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 등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 간소화, GKS 사업 선정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참조).

10)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교육부 제공).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

우수 인증대학 (매년 심사)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대상 국가 확대)		
인증대학 (모니터링 대상)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불체율 높은 국가 출신 유학생 제외)		
미인증대학 (실태조사 대상)	일반대학 : 유학생 학력 요건, 재정 능력 등 심사	
	비자 심사 강화대학 : 엄격한 비자 심사	컨설팅대학 (명단 비공개) : 면담 등 정밀 심사
		비자 발급 제한 대학 :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자료: 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 입학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대학 평가지표로 학위과정의 경우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고,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비리 발생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 인증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며, 유학생을 1명 이상 보유한 대학을 대상으로는 정량지표¹¹⁾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의 목적 및 대상이 유학

11) < 실태조사 평가지표 > ※ 4주기 기준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5% 이상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0% 이상
핵심지표 (5개 중 3개 충족)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전문대학 50% 미만)	핵심지표 (4개 중 3개 해당 시 비자심사 강화)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6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국내 체류 유학생 대상 동영상 강의 수업 30% 이내 제한 규정 마련 여부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공인 언어능력(신입) 15% 미만 공인 언어능력(재학) 15%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자료: 교육부 제공

업체를 통한 유학생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개정안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관리에 대하여 대학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하는바,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관리에 대한 대학의 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학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대학의 자율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간섭으로 작용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국인 학생 선발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해당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무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외국인 학생 입학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의견 현황 >

기관명	주요의견
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별도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조사를 신설하는 것은 대학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1) 대학정보공시: 외국인학생 현황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등
한국대학 국제교류 협의회 (KAFSA) 등	- 국제화역량 인증을 통해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의 출장 현황까지 보고하는 것은 과도한 자율성 침해 우려 존재 - ‘모집을 위한 출장’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화 전략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통제될 수 있음 ※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국제 교류 및 외국인 학생 모집 전략을 수립할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일률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학의 국제화 역량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매년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사후 보고하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보고의무를 부과함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권리 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현재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이므로, 적발된 대학에 한정하여 자료 제출과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하는 방안 제시 - 중개 수수료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 경쟁과 비밀 보호를 훼손 우려 및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외부에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문 의 처

02)6788-5187